

「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8월 25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9월 4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9월 4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-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지원조례의 홍보 및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 군민의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홍보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포상 규정 신설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- 제안일자 : 2025. 8. 25.
- 회부일자 : 2025. 9. 4.
- 상정일자 : 2025. 9. 4.

2. 제안이유

-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지원조례의 홍보 및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 군민의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홍보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포상 규정 신설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참여 기반을 넓히고 공로자 포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7조(홍보)에서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8조(포상)에서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홍보활동 추진 및

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를 확
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고 수
권 범위 내에서 위배 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차. (생략)
3. ~ 7. (생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. 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지원조례의 홍보 및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 군민의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: 안 제7조

(신설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나. 굿매너 문화시민 선정을 위한 근거 마련 : 안 제8조

(신설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30,000천원 편성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5. 6. 20.~2025. 7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평창군 공고 제2025-957호, 행정담당관-15023(2025. 6. 20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8552(2025. 6. 9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8552(2025. 6. 9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2708(2025. 6. 19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1971(2025. 7. 31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9조로 하고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홍보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. ~ 6. (생략) <u><신 설></u>	1. ~ 6. (현행과 같음) 제7조(홍보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8조(포상)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7. (생략)	9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7조(홍보) : 문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이 시 군
연락처	(033) 330 - 2210